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26
----------	-----

2025. 1. 21.(화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5년 1월 10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5년 1월 21일

-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상식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고려인동포는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음
- 고려인동포 유학생은 해당 국가에서 우수한 인재로서 국내 유학, 이주·정착 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유학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

- 이에 충청북도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 중인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고려인동포 외국인 유학생 관련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- 고려인동포 외국인 유학생 및 유학 희망 고려인동포 지원계획 수립, 지원 사업, 유치 활동 등(안 제5조 ~ 안 제7조)
-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(안 제8조 및 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고려인동포는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 이민, 항일독립운동,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된 우리 동포이지만 그동안 소외되어 왔음
-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고려인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3국(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우즈베키스탄)을 방문하여 고려인동포의 대한민국 이주 의사(특히, 청년층의 대한민국 유학 희망 및 방문 의사), 현장 실태 등 고려인동포 유학생 유치에 관한 정책을 확인했음
- 이에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)의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 중인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(이하 “고려인 유학생등)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한함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조문으로
 - 도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 유학생 및 도에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규정임을 밝히고 있으며,
 - “고려인동포 유학생”의 정의를 규정하는 등 조례에서 정한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함
-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도로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를 위한 지원 및 유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함
-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‘다른 조례와의 관계’에 관한 사항으로
 - 「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」의 외국인과 지난해 12월 발의된 「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의 외국인 유학생 규정과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
- 안 제5조는 고려인 유학생등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으로
 - 고려인 유학생등의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및 방법을 설정한 것은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함
 - 특히, 지원계획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정책 추진의 객관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조례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적절함
- 안 제6조는 고려인동포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적응교육, 우수 고려인동포 유학생 장학금 지원, 유학 종료 후 취업·창업 연계 등 지원사회 정착 지원 등 고려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음

- 안 제7조는 고려인 유학생등의 유치 확대를 위해 유학 컨설팅 및 박람회, 유학 희망 고려인동포 초청 도내 대학 투어 및 설명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업내용이 적절함
- 안 제8조는 제5조부터 제7조의 지원계획 수립, 지원사업과 유치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내용이 타당함
- 안 제9조는 고려인 유학생등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(필요성)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하고 있는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충청북도 내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·정책적 근거마련의 필요성은 충분함
- (타당성) 이 제정안은 고려인 유학생등의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계획수립, 사업추진 및 유치활동, 전문 기관 등에 대한 업무위탁,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그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함
- (법적합성) 상위 법령 위배 또는 부패영향평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집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한 사업내용 조정, 자구 수정 등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
○ 다만, 관계 부서에서는 K-유학생 제도와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과 중복 및 충돌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사업수행이 필요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」

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충청북도 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고려인동포”란 「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고려인동포 유학생”이란 고려인동포로서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거주하고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(이하 “고려인 유학생등”이라 한다)를 지원하고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고려인 유학생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 수립) ①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에 관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고려인 유학생등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2. 고려인 유학생등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
3. 고려인동포 유학생 성별, 연령 등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
4. 고려인동포 유학생의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
5. 고려인 유학생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
6. 고려인 유학생등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다음 해 지원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 사업)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고려인동포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지역사회 적응 지원
2. 우수 고려인동포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
3. 고려인동포 유학생의 정주여건 지원
4. 고려인동포 유학생의 유학 종료 후 취업·창업 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
5.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유치 활동)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.

1.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개최
2. 유학 희망 고려인동포 초청 도내 대학 투어 및 설명회 개최
3. 그 밖에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업무의 위탁 등)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계 기관,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대학, 국내외 고려인 관련 단체 및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**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**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고려인동포”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, 항일독립운동,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□ 재외동포기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외동포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
 - 나.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(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)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2. (생략)

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한외국인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2. “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”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결혼이민자”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)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,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
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4.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~ ⑤ (생략)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11조(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고등교육법 시행령

제29조(입학·편입학 등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제2호·제3호·제8호·제9호·제11호·제12호·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. <개정 2000. 11. 28., 2001. 1. 29., 2001. 12. 31., 2002. 5. 27., 2005. 3. 25., 2006. 1. 13., 2007. 1. 24., 2008. 2. 14., 2008. 6. 5., 2008. 9. 18., 2009. 10. 7., 2010. 6. 29., 2010. 9. 1., 2011. 10. 17., 2013. 3. 23., 2014. 2. 11., 2014. 4. 29., 2015. 11. 30., 2016. 8. 29., 2016. 10. 25., 2017. 1. 17., 2018. 10. 16., 2022. 2. 28., 2023. 4. 18., 2024. 2. 20.>

1. (생략)

2. 재외국민 및 외국인(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)
3. ~ 6. (생략)
7.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
 - 가. 재외국민
 - 나. 외국인
 - 다. 「국적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
8. ~ 16. (생략)
- ③ ~ ⑦ (생략)

□ 출입국관리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

2. 10., 2014. 3. 18., 2018. 3. 20., 2020. 6. 9., 2021. 8. 17.>

1. “국민”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.
2. “외국인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

제10조(체류자격)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.

1. 일반체류자격: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
2. 영주자격: 대한민국에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

[전문개정 2018. 3. 20.]

제10조의2(일반체류자격)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(이하 “일반체류자격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단기체류자격: 관광,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(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)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
2. 장기체류자격: 유학, 연수, 투자, 주재,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

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,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,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3. 20.]

제17조(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)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.

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5. 14.]

제18조(외국인 고용의 제한)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10. 5. 14.]

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고려인동포 유학생은 해당 국가에서 우수한 인재로서 국내 유학, 이주·정착 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유학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
- 이에 충청북도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 중인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2. 비용 발생 요인

-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 소요 발생
(조례안 제6조 ~ 제7조)

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6조(지원 사업)
- 조례안 제7조(유치 활동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재정수반요인 :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에 대한 소요 예산
(기존 K-유학생 사업 예산에서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)
- 추 계 기 간 :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으로 함

나. 추 계 결 과 : 3.96억원(도비 100%)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
세 출	396	99	99	99	99	
유학설명회	120	30	30	30	30	
취업박람회	120	30	30	30	30	
사무관리비	36	9	9	9	9	
유학생 K-가디언 멘토멘티 그룹	80	20	20	20	20	
국외여비	40	10	10	10	10	
재원 조달	396	99	99	99	99	
도비	소 계	396	99	99	99	99
	기존 사업비	396	99	99	99	99

※ 추계 결과 : 396백만원(도비 100%)

- 취업박람회 30,000천원 × 1회 : 연1회
- 유학설명회 30,000천원 × 1회 : 연1회
- 사무관리비 : 유학설명회 등 유학생 해외 유치 활동을 위한 브로셔 등 제작
- 멘토멘티 그룹 : 도내 지역민과 고려인동포 유학생 멘토 멘티 사업 추진
- 국외여비 : 유학 설명회 참여를 위한 추진단 국외 여비 계상